

의안번호	2212635
의 퇴 인	강대식의원
회 답 일	2025.11.21.
추계번호	25D4784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(입영 후 귀가) 신설	입영부대의 장은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사람의 경우, 입영한 날부터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음(제1항)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7조(입영 후 귀가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과거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였던 신체검사는 2021년부터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였고,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군부대 신체검사를 통한 귀가제도가 폐지되었음
- 개정안은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사람의 경우, 입영한 날부터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. 이하

이 조에서 같다)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해서 병무청이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,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재실시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- 2024년 기준 73,517명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았으며, 소요예산은 32억 4,000만원으로 검사단가는 1인당 44,071원임

[표 1] 입영판정검사 현황

구 분	2022	2023	2024
수검인원(명)	37,459	86,637	73,517
집행액(백만원)	1,478	3,383	3,240
검사단가(원)	39,456	39,048	44,071

자료: 병무청
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입영 전후 기간 중 질병·부상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, 현 시점에서 추가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인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